즉시접수	당일접수	기 (10년 1) 대한법률구조공단
		ac.or.krf
제출자		www.klc
총	 건	- Complete and Triple and American

#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

コート	人		년	월	일	처 리	جا عا ما۔		기관	확인	각종	통지
접	수	수 제			호		디인	1				
						•	부등	동산의 .	표시			
 등기	원인	 ]과 _	1 연	 월일								
		의 를										
경 정 할 사 항												
구분		성 (상:	호. 명	명 [칭)				루번호 록번호)		주	소 (소 재	지)
신												
청												
인												



등	록	면	허	세	금				원
지	방	亚	육	세	금				원
세	액		합	계	금				원
					금				원
등	기 신	청	수 수	료	납부번호	:			
					일괄납부	- :	건		원
				춘	부	서 면			
· 등 기	기신청수 임장	宁宁。	수필확 연 로 영수 주소변동	·필확역	통	〈기 타〉			
					년	월	일		
	Ŷ	귀 신	청인			(1)	(전화:	)	
(또는)위 대리인							(전화:		)
		7	이방법욱	<u>]</u>			귀중		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

		년	월	일	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   	수	제		호	처 리	인		

### ① 부동산의 표시

- 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
-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 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
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  1층 100㎡
  2층 100㎡

이 상

②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4월	<b>3</b> 일 <b>신청</b> 칙	오			
③ 등	·기의 목적	등기명의인 표	시경정				
<b>④</b> 경	정 할 사 항	갑구 3번 등기명의인 이대백의 주소 "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1(서초동)"을 "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(서초동)"으로 경정	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	소 (소	재 지)		
5							
신	이 대 백	700101-1234567 서울특별시		서초구 서초대로8	서초대로88길		
청	VI -II - <del>I</del>	700101-1254507	20(서초동)				
인							



⑥ 등 록 면 허 세	금 12,000원
⑥ 지 방 교 육 세	금 2,400원
⑦ 세 액 합 계	금 14,400원
	금 6,000원
⑧ 등 기 신 청 수 수 료	납부번호 : 12-12-12345678-0
	일괄납부: 건 원
	-1 12 11 -1

⑨ 첨 부 서 면

-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**1**통
- ᇀ 〈기 타〉
- 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**1**통
- <del>· 위임장</del>

삭1행

·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**1**통

2017년 5월 26일

①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

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

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

##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## 등기신청안내서 -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

#### ■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란

등기기록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(저당권자, 전세권자, 임차권자 등)의 표시(성명, 주소 등)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기록에 잘못 기록되었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방법

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층 사용하고, 벽지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서에 서명응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#### ① 부동산의 표시란

토지(임야)는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 순으로, 건물은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구조, 종류, 면적 순으로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.

####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경정등기사유에 따라 "신청착오", "착오발견", "유루발견" 등으로, 연월일은 신청착오일 경우에는 착오가 생긴 등기의 신청연월일을, 착오발견 또는 유 루발견인 경우에는 경정등기 신청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
#### ③ 둥기의 목적란

"소유권(또는 저당권 등)등기명의인 표시경정"이라고 기재합니다.

#### ④ 경정할 사항란

경정대상 사항과 경정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.

(예) 소유명의인 주소 "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1 (서초동)"을 "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(서초동)"으로 경정

#### ⑤ 신청인란

경정할 등기명의인의 경정 후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합니다. 그러나 신



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경정 후의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 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경 정 후의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 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#### ⑥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 다만, 착오발견이나 유루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는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, "지방세법 제26조"로 기재합니다.

#### ⑦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#### ⑧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 다.
- ④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#### ⑨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#### ⑩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#### < 신청인 >

위임장

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#### 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####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#### ②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

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 등을 첨부합니다. 그러나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에 의한 경정등기에는 그 경정 대상 등기의 등기신청서 사본을 첨부합니다.

#### 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#### 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#### < 등기과 · 소 >

#### 법인둥기사항증명서

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를 첨부합니다. 위 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에는 등기기록상의 전 주소 등과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등이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.

#### く기 타 >

① 착오신청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(성명, 주소 등)가 주민등록표 또는 기본증명서상 표시와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과 경정 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, 그 증명은 시, 구, 읍, 면장의 증명에 의하여



할 것이며, 그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(공무원 재직증명, 법무사 자격증 사본)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, 그 동일인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.

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・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주민등록표초 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